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률

1. 추진 배경

‘92년부터 환경표지, 재활용제품 등 환경친화적인 상품의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 부족, 초기 시장형성 미흡 등의 이유로 친환경상품의 보급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으로 환경표지 제품의 경우, 공공기관 대상제품의 구매비율이 30%에 불과하고 국제적으로 친환경제품 구매 법령(일명 녹색구매법)의 제정이 활발하고,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예정.

유럽, 일본, 대만 등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의무구매를 촉진하는 법령 제정이 구체화되고 확대되는 추세로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녹색구매기준”을 예규로 제정(‘03.5)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확대를 추진중.(‘04.1.1 시행)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법령 제정을 지속 요구하여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환경경제연구회의 환경포럼과 녹색구매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 기존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을 지적.

2. 친환경상품 보급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상품 보급 현황

1992년부터 환경관련 상품의 보급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의무)구매 제도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며 표1 과 같이 환경표지 인증제품, 재활용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매년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공표

<표1. 환경관련 상품 우선구매 관련제도 현황>

구 분	환경표지제품	재활용제품
시 행	1992	1992
근거법령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운영기관)	환경부 (환경마크협회)	환경부 (한국자원재생공사)
대상제품	환경표지 인증제품 (85품목 724제품)	재활용제품 (KS, GR, 환경마크 등 19품목 230제품)
지원정책	◦공공기관 우선구매 ◦수도용자재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공공기관 의무구매 ◦가격차등제(10%) 등

환경마크 및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연간 약 4,000억원(’02)을 구매하나, 여전히 구매액과 비율이 저조

- 환경마크제품은 ’01년 1,569억원, ’02년 3,018억원을 구매하여 ’02년 조달청 내자구매액(7.4조원)의 4%, 대상제품 구매액(1.1조원)의 30%에 불과하고 재활용제품은 ’01년 757억원, ’02년 890억원을 구매하여 ’02년 조달청 내자구매액(7.4조원)의 1.2%, 재활용제품 매출액(2.5조원)의 3.5%에 불과

- 환경표지 인증 취득 품목(45종) 중, 공공기관에서 상위 7개 품목의 구매액(2,630억원)이 87%로 대부분을 차지

- 환경표지품목 중 재활용제품은 54%를 차지하였으며 ’02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구매 잠재력은 약 8조원으로 추정되나, 현재 구매금액은 4천억원에 불과(’02년 기준)

- ’02년 기준 공공기관은 총 921개 기관이 해당되며 공공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구매실적은 20조원이며, 이중 내자 구매 7조4천억원, 시설공사는 11조9천억원에 달함

- 친환경상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할 경우 공공기관의 구매 잠재력은 최소 7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OECD의 경우처럼 국내총생산(GDP)의 9.13%를 공공기관 구매액으로 추정할 경우 구매 잠재력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국내 GDP 545조원)

□ 현행 제도상 문제점

의무성(강제성)이 없는 권장형태로 운영되어 각 기관에서 제출한 계획과 실적의 취합에 불과하고, 실적 평가시에도 기관의 구매특성 등을 고려치 않음

개별법령에 따라 매년 구매실적 집계·보고를 이중으로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일선 담당 공무원의 관심부족 요인이 되고 있으며 매년 921개 공공기관(약 29,000여 개별기관)에서 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의 구매실적을 중복하여 실적집계 및 보고를 실시

친환경상품에 대한 범위설정 및 통합관리체계 미흡하여 환경표지제품, 재활용(GR마크)제품, KS제품 등 분산 운영으로 친환경상품의 정의가 불명확함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자 하여도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구매기관에서도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므로 제도시행의 효과분석과 홍보 미흡, 공공기관에 대한 꾸준한 업무지원 부족 등 구매관리지원체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상품 사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증가, 사회적 비용감소 등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당위성에 대한 홍보 부족

현행 정부 조달구매 체계에는 환경친화성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친환경상품은 원료대체·신기술 채택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므로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는 보급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친환경상품 보급을 위한 시장형성이 저해되고 생산 및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 초래

3. 외국의 사례

□ 유럽연합(EU)

’03.6월부터 제품·서비스의 제조·생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차등세제, 공공조달, 에코라벨링, 정보제공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 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채택하고, 회원국의 공공기관 녹색구매 행동계획

입안 추진

EU차원에서 ’03.10월까지 녹색구매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회원국은 ’06년까지 행동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하고 이를 3년마다 수정하며 공공기관 조달기준 등을 담은 친환경상품 D/B 구축(’03년), 공공기관 녹색구매를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04년)

□ 일 본

“환경물품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00.5월, 환경성)하고 ’01.4월 법률 시행 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참여율 증가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75%의 기업에서 친환경상품 브랜드 및 매출이 증가

□ 대 만

“정부구매법”에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우선 조달, 가격차등제(10%) 등 규정(’99년)한 후 환경표지제품 지속증가(’99년 440개 → ’03.6월 1,250개 제품)

□ 미 국(뉴욕주)

주(州) 재정법에서 재활용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가격차등제(10%~15%) 등을 규정하여 시행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제정방안

기본방향

◆ 친환경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 상품의 조달·구매체계의 법적 확립

◆ 기관별, 품목별 의무구매비율을 지정·이행하고 조달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부여

◆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업무를 상시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설립과 구매담당자--상품제조자-조달기관-지원센터간 구매네트워크 구성

※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등 타부처 소관사항 협의, 개정

※ 기존 환경마크를 친환경상품을 총괄하는 새로운 마크로 변경

□ 주요 골자

“친환경상품” 정의(안 제2조)

- 동일 용도의 상품 중 환경성이 우수한 상품으로써, 환경표지제품, 재활용제품 및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기본방침, 집행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방침을 수립하며,
-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1년 단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기관별, 품목별 의무구매 비율 지정(안 제7조)

-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집행계획을 분석하고, 그중 기관별, 품목별 의무구매 비율에 대하여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별로 이행

친환경상품의 구매기준 설정(안 제8조)

-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경우, 일반상품에 비해 10% 이내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구매실적 제출 및 평가(안 제9조)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기관별 구매실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함

관계기관 및 조달청장의 역할 증대(안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구매서 및 시방서 등에 친환경상품 구매근거 반영을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응하는 등 구매촉진 노력

-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구매 요청이 있을 시, 친환경상품을 우선하여 구매·공급하여야 함

친환경상품 생산·유통자에 대한 지원 등 기반조성(안 제12조 및 제13조)

- 정부는 친환경상품에 대해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력 양성, 정보교류, 친환경상품 인증획득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친환경상품의 기술개발, 생산·유통·판매·수출에 관한 촉진하도록 지원

친환경상품 구매지원센터 설립·운영(안 제14조)

-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정보 수집·보급, 홍보, 구매실적·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비용편익효과 분석 등을 지원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안 제15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5조)

-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의무구매비율 등 중요 결정사항의 자문

- 관계기관, 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구매실적 우수담당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안 제11조 및 16조)

-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 예산절감을 하는 경우 절감액의 일정액을 담당자에게 장려금 지급, 공로자 및 우수기관에 포상

<표2.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법 제정에 따른 개선내용의 요지>

구 분	현 제도	개 선 방 안
친환경상품 정의	없음	신설(환경표지, 재활용 제품, 에너지절약제품 등)
보급계획, 실적 공표	연 1회, 기관별 구매계획·실적을 공표	기본방침(5년), 집행계획 ·계획(1년)을 협의·공표
의무구매 비율	품목별, 기관별로 동일한 구매의무 규정	품목별, 기관별로 의무구매비율을 차등 설정
구매실적 보고	재활용제품, 환경표지 제품별로 보고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통합 보고
상품 정보제공	지원기관, 절차 없음	친환경상품 구매 지원센타 지정·운영규정 신설
상품 구매기준	10% 범위 내에서 가격 차등 고려 가능	조달청 구매기준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
구매담당 공무원 지정	별도 규정 없음	법률상에 지정 의무규정을 명문화
조달청 역할	별도 규정 없음	물품구매서, 시방서 등에 구매기준 반영근거 마련

5. 법률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 공공부문 구매체계의 녹색화

환경제품 구매촉진대회 등 일과성 정책을 탈피하여, “녹색구매”에 대한 중장기 목표 설정 및 법적 체계를 완비

□ 친환경상품에 대한 상시 구매 네트워크 운영

친환경상품에 대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일반 소비자까지 상시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공공기관 및 국민들의 환경친화적 구매(소비) 패턴 정착에 기여

□ 친환경상품 보급확대로 생산·소비패턴의 전환

현재 4,000억원에 불과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7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여,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패턴을 정착

□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친환경상품 보급·사용 확대로, 상품의 제조·소비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저감

□ 국내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국내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시장 활성화로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과 대외적으로도 친환경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

-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제품 환경성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

6. 향후 추진계획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03.11월)

“친환경상품 구매 시범사업” 추진(‘03.11~’ 04.12)

-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품목별 구매비율 설정, 네트워크 등을 시범 운영하며, 제도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 04.4월까지 1차 평가결과를 법안에 반영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추진팀(T·F) 구성·운영(‘03.11~)

- 환경부, 환경마크협회, 재생공사,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
- 친환경상품의 분류, 네트워크 구성, D/B구축
- 기타 법령 제정과 원활한 이행을 위한 실무사항의 논의, 준비

`04년부터 법안 작성, 부처협의 등을 추진(’ 04년)

※ 환경표지(마크)의 개정·시행(’ 04.5월 확정)